■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www.emsip.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위성방송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만 해당합니다)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울교통공사		법인등록번호 240171-002390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698-87-00598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등록기준지		
	담당자	성명 안0기	전화번호 010-****-2**0
		팩스번호	전자우편 ***1019@seoulmetro.co.kr

시험 전파	발사기간 : 허가시 ~ 준공검사시
	발사내용(주파수, 전파형식, 출력) -주파수 : 778MHz(Tx) -전파형식 : 10M0D7W -출력 : 40W 723MHz(Rx) 10M0G7W
운용개시 예정일	

「전파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9 월 일

신청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3.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합니다) 1부 4.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만 해당하되,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아마추어국은 제외합니다) 1부 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전파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제5호를 제외한 선박에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